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8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산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사촌인 H은 2020. 4. 7. ○○시 I 대 295㎡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나. H의 직계비속인 J과 직계존속인 K, L는 2020. 7. 6. H에 대한 상속을 각 포기하였다.

다. H은 2020. 3. 26. M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이 사망한 이후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신용보증재단은 2021. 1. 8. M은행에게 51,050,7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후 ○○신용보증재단은 원고들을 상대로 대위변제한 채무를 구상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50305호), 원고들은 민법 제1019호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증인을 신청하여 그 신고가 2022. 4. 28. 수리되었다(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2느단32호).

마. 한편 N유한회사는 2022. 12. 13. 원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소외 O이 2023. 9.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3. 6. 1.)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원고들로 보고, 2023. 7. 20.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 합계 4,178,6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세' 및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1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2020년도분부터 체납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납기 전 징수 등의 방법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을 통해 이 사건 재산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주장 ①).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1022조), 이 사건 재산세는 상속재산을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 사건 재산세를 납부할 책임을 부담할 뿐 원고들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주장 ②).

나. 구체적 판단



1) 주장 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호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22. 12. 13. 원고들 명의로 2020. 4. 7.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23. 9. 4. 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원고들이 각 7분의 1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2023. 6. 1.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이 사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들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재산세 상당액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은 2020. 11. 9.까지였던 점, ○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P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P이 여전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P이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고가 교부청구를 할만한 근거가 없었던 점, ○ 2020년 재산세는 이후 J에게 부과되었으나, J이 상속포기를 하여 부과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재산세 등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대하여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중국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민법 제998조의2에서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에 관한 비용'은 조세 기타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22조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소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즉 '상속에 관한 비용' 중 관리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재산세가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 재산세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변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에서만 이 사건 재산세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할 뿐, 원고들의 고유재산으로 이 사건 재산세를 부담할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원고가 그 근거로 제시한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724 판결은 처분청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



산을 압류하자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재산세부과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문○○

판사 선○○



별지

관련 법령

■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